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및
외국인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 마련 등〉
■ 유상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627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유상범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7. 11.
3. 회 부 일 : 2024. 7.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성명, 성별, 외국인등록번호 등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으나, 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없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기 및 관리하는 실정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는 성명이 영문으로 등록된 외국인이 다른 기관에는 성명이 한글로 등록되거나, 한글 성명조차 여러 기관 간 일치하지 않는 등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초래되어, 수사·과세·복지 등 행정업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외국인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인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보유·관리 및 제공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7호, 제78조의2 및 제78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외국인의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외국인 기본인적 정보”를 정의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이 외국인에 대한 수사·과세 등을 위해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보유·관리 및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7호, 제78조의2 및 제7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6.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6. (현행과 같음) 17.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이 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외국인의 여권에 기재된 해당 외국인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사진 및 여권의 번호 나. 외국인의 선원신분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외국인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사진 및 선

<신 설>

원신분증명서의 번호

다.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제78조의2(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

공) ①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이 외국인에 대한 수사, 공소의 제기

· 유지 및 과세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에 사용할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

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인 기본인적정

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에 대한 수

사, 공소의 제기·유지 및 과세 등 관

계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행

정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외

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업무에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등의

<신 설>	<u>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u> <u>제78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u> <u>① 법무부장관은 제78조, 제78조의2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보유·관리 및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u>
--------------------	--

2. 검토의견

개정안은 ① 법무부장관이 다른 행정기관 등에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및 ②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보유·관리·제공하는데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관리 및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부처간 통일되지 않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표준화하고 외국인 행정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외국인 관련 국가행정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통일된 성명표기,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신원정보 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반면, 외국인은 부처별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기 관리 체계나 규정이 미비하고, 부처마다 외국인 성명,

생년월일 등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어 동일인 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출입국, 조세 등 국가행정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기관별 인적사항 표기 불일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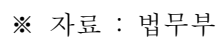
※ 자료 : 법무부

또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와 관련된 통일화된 정보 공유시스템이 미비하여, 국내에 입국한 적 없거나 이미 출국한 외국인 명의를 도용한 거래관계가 발생하는 등 외국인 업무처리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에 따라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규정을 마련하고 외국인 행정정보시스템을 갖추려는 것으로, 관계 행정기관에서 외국인 관련 업무 처리 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생성이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법무부에 요청하고 법무부는 플랫폼을 통하여 표준화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므로 외국인 행정업무처리가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보임.

나아가 법무부와 관계 행정기관이 개정안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

<외국인 행정정보시스템 개요>



1) <사업내용>

- (출처 : 법무부)

- 6 -

다만, 안 제78조의3제1항의 ‘관계 법령’의 의미와 관련하여, 이는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 당해 행정기관 등이 법무부장관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의미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여지나,³⁾ 외국인 정보의 ‘수집·보유·관리’와 ‘제공’의 근거가 함께 규정됨에 따라 그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제78조의3제1항 중 “제78조, 제78조의2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보유·관리 및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제78조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보유·관리하거나 제78조의2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시스템”으로 수정하거나, “관계 법령”을 “정보 제공의 근거가 되는 다른 법령”으로 수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표현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53

3) 예컨대, 「병역법」의 경우 병무청장이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를 위하여 국적 변동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병역법」 제9조(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에 대하여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에 필요한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국적을 이탈·상실한 사람 등에 대한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1. 9.>

1.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 법원행정처장

2.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적 변동에 관한 자료: 법무부장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통보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병역준비역 편입자로서 국외출생(國外出生)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의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